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8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민전·김용태·박상웅

주진우 • 박덕흠 • 박수민

김석기 • 인요한 • 김상욱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를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 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로 한다.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립대학병</u>	제1조(목적) <u>국립대학병</u>
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	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
<u>을 설립하여</u> 「고등교육법」에	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 • 연	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
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	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u>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2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u>보건복지부장관</u>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 ① (생 략)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	2
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	
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 이 임명	<u>보건복지부장관</u>
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	

- 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 5. (생략)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⑤ (생 략)
- 제14조(대학병원장) ① ② (생 제14조(대학병원장) ① ② (현행 략)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 ⑦ (생 략)
- (생 략)
 -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 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 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생략)
-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

									•

- 1. ~ 5.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장관-----.
- ④·⑤ (현행과 같음)
- 과 같음)
- ---보건복지부장관-----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 • 관리-----
 - (5) (현행과 같음)

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u>교</u>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 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보건</u> <u>복지부장관</u>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u>장관</u>	_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장관</u>	